

OECD

가입과 한국의 농약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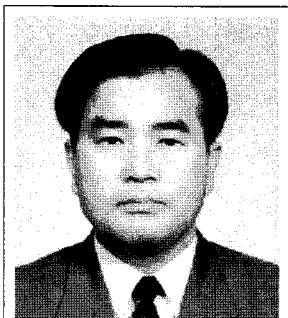
- 국제적 흐름과 대처방안 -

무한경쟁시대의 적극적 선택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화를 향한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농약업계는 이미 유통혁명의 태풍이 예고되고 기존업계의 혁신적인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기존 농약산업의 전반적인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때에 농약산업은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농약개발 기반조성을 더욱 가속화하지 않으면 그 존립기반을 상실한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어 격변의 전환기를 맞아 기업을 경영하는 최고경영자들에게 국제화 마인드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80년대 이후 세계는 정치, 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미·소간의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국제화 사회에서는 안보위주의 협력개념이 약화되고 국가관계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한편 경제적으로는 기술, 통신, 교통의 발달로 국제경제의 세계화는 급속도로 가속화되어 자본, 기술



김 부 영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독성연구소 특수독성과장

OECD



OECD GLP WORKSHOP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 왼쪽부터 필자, OECD 환경국 국장 Ms. Eba Rosinger, 네덜란드 대표 Mr. Jan Van Der Kolk, OECD 환경보전 및 안전과 Ms. Dian Turnheim, 캐나다 대표 Mr. Bill Murray, 일본 대표 Mr. Yasuhiro Hayakaya.

등의 생산요소와 서비스의 교역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국제적 분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은 한마디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장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협력체제에 참가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APEC 활동, ASEM2000 정상회의 유치, UN안전보장이사회 진출 등이 이루어졌고 급기야는 선진국들만의 사랑방인 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경쟁력없는 가시덤불 미래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라는 국제기구는 1961년 '다원적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인권존중'의 3대 이상을 표방하고 설립되었다. 회원이 되고자 하는 국가는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국가이어야 한다. 설립목적은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가에 경제지원을 하며, 다자간 자유무역원칙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있다.

OECD의 성격은 한마디로 세계경제주도국간의 경제협의체로 일컬어지고 있다. 국방을 제외한 공공정책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인 협의체이다. 즉 OECD는 경제, 환경, 에너지, 고용, 교육, 소비자보호 등 국방을 제외한 모든 경제, 사회, 복리문제를 총 망라하는 포괄적인 경제협의체로써

각 분야별 정책상호간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GNP 세계 11위, 무역규모 세계 12위, 자동차생산 세계 5위, 반도체생산 세계 3위 등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농약산업은 그에 비해 너무 초라할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OECD 가입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은 그 발전 규모가 점점 커지지만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결국 외국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평범한 사실을 되새겨 본다면 우리 농약산업의 미래가 결코 파란불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라이센싱에 의존하여 단기적 이익에만 급급해온 결과 우리 농약산업의 기술력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과학적 마케팅력의 부족으로 외국기업에 의한 시장잠식이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경영의 국제화마인드 부족으로 선진기업과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가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다.

환경국 농약협의회서 전반적 검토

그러면 OECD내에서 농약관련 문제는 어떠한 조직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최근의 활동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보기로 하자.

OECD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그 조직은 사무국과 11개의 분야별 업무국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인원은 약 1천8백여명 정도이다. 농약문제는 환경국(Environmental Directorate)산하 환경보건 및 안전과(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Divis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상설협의기구로 농약협의회(Pesticide Forum)가 구성되어 있다. 이 협의회에서 농약관련 제반 문제를 협의하는

데 그 결정사항은 화학물질그룹과 관리위원회(Cheical Group and Management Committee) 공동회의에서 2차적인 토론을 거친다.

그런 다음 환경정책위원회(Environmental Policy Committee)의 의결을 거치면 환경국의 최종결정이 된다. 환경국의 최종결정은 OECD 평의원회(Council)-OECD 가입국가의 프랑스 파리주재 대사들로 구성된 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OECD의 최종결정으로 확정되어 회원국들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화학물질분야 OECD 가입과 관련하여 수차례 걸쳐 농약협의회, 화학물질그룹과 관리위원회 및 GLP개정전문가회의 등에 참석한 바 있어 이 중 농약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96농약협의회서 무엇이 논의됐나

지난 1996년 2월 및 11월에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제4차 및 5차 농약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OECD 회원국가 및 IPCS, FAO, UNEP, WHO, EU 등 관련 국제기구는 물론 GCPF(중전의 GIFAP)을 비롯한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및 TUAC(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등이 참석하여 농약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및 농약의 국가간 유통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각국 등록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포괄적인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논의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OECD

1. IPCS(International Program on Chemical Safety) 활동 논의

IPCS는 농약독성 및 안전성 평가 등 IPCS의 농약관련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크게 증가하고 있는 농약 등록자료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국별 농약평가의 국제화 방안을 제안함.

회원국들은 IPCS의 상기 제안을 지지하면서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OECD 농약협의회 논의 결과의 적극 활용을 주문함.

특히, 농약협의회가 국별 농약평가의 국제화에 관한 IPCS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WHO에 촉구하는데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IPCS/OECD 워킹 등에서 IPCS의 역할을 계속 논의하기로 함.

2. 농약의 등록

각국의 농약등록시 검토보고서의 교환, 농약 검토 일정 및 보고서에 관한 D/B화, 농약 등록자료 관련 재산권 및 비밀기업정보의 보호, 업계의 데이터 제출과 국가 검토보고서와의 조화, CD-ROM을 이용한 데이터 제출 등에 대한 활동상황 보고에 이어, 안전 별로 각국별 comment 제출 및 초안작성시한 등 향후 추진방향을 협의.

농약자료 검토보고서 교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확대방안을 논의. 캐나다, 호주 등은 국별 보고서의 제 문제를 GCPF와 협의.

농약 검토일정(PC용)은 96년 11-12월중 농약협의회 회원국에 회람키로 하고, 매년 사무국이 보완키로 함. 인터넷 활용시 비밀기업정보 문제, ICRC(International Committee on Responsible Care)의 D/B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96년 2월 농약협의회 결정에 따라 추진중인 재산

권 및 비밀기업 정보자료 작성은 국별 설문서 결과를 검토하여 97년 6월 농약협의회에 제출.

업계 자료제출과 국별 검토보고서의 조화에 관한 EU 문서를 비EU 회원국에 배포하고 EU와 관련지침을 97년 말까지 마련. 이를 위해 OECD내에 steering group을 구성 (호주,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일본, EC 참여).

3. 농약등록 요구자료 범위

Pheromones의 자료요건에 관한 캐나다/미국의 관련자료(room doc 11)에 관한 국별 검토 의견을 97년 3월말까지 제출하고 다음 농약협의회에서 관련자료의 조사방안을 검토.

생물농약(microbials)의 개발과 관련하여 생물농약 등록시 검토하여야 할 자료 범위에 대해서는 EC에서 1997년 4월까지 초안을 작성, 배포하고 국별 검토의견을 97년 7월까지 제출.

EC는 농약등록시 농산물에 대한 최대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잔류 데이터 요구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 97년 6월 농약협의회에 제출키로 하고, 이를 돕기 위한 OECD 협의그룹을 구성(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 참여).

4. 농약 위험성 감소

OECD 농약협의회에서는 EUROSTAT(Strategic Talk)의 관련 프로젝트(97년 완결예정)에 검토 의견 제출 등으로 참여.

농약 사용과 위험도의 연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워킹을 97년 4월 21-23일 덴마크 주관으로 개최.

농약 위험성 감소의 진전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IPM(International Programme on Management)에 관한 워킹그룹을 스위스 주관으로 98년에 개최.

OECD, FAO의 회원국별 관련 활동에 관한 자료를 보완하여 다음 농약협의회에 제출.

1996년 12월 농업/환경위원회 합동 작업단에서 토의할 “농업정책, 농약정책 및 환경”에 관한 종합 보고서(COM/ENV/EPOC/AGR/CA(96)141)에 대한 검토의견을 96년 11월말 까지 사무국에 제출.

5. 농약의 시험기준

1993년 시험기준 설정 우선순위를 생물농약 등의 새로운 관심분야 부각 등으로 우선 순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 작업단(EC, 스위스, 일본, 미국)에서 개정안을 작성, 97년 4월 National Coordinators Meeting에 제출.

농약 검사기준의 개발, 수정 작업은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지고 계속 추진.

6. 소독된 종자의 국제간 이동

국제종자무역협회(FIS, International Seed Trade Federation)는 농약으로 소독처리된 종자의 수출입관리가 국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별 관리규정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보고하고, 농약 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를 제안.

OECD는 농업위원회와 환경위원회 전문가(농업 코드 및 스킴담당)와 논의하고, 회원국들은 국내 담당기관과 상기 문제점을 파악, 농약협의회에 기여 방안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함(FIS는 현황보고서 작성).

7. 기타

1996년 8월 3일 제정된 미국의 'The Food Quality Protection Act'에 대하여 미국대표 Ms. Anne Linsday의 개요설명이 있었음.

미국의 Ms. Anne Linsday 대표와 스웨덴의 Ms. Vibeke Bernson을 각각 차기 OECD농약협의회 의장으로 선출했음.

전문가·업계등 적극참여 필요

OECD 농약협의회는 지난 1994년 1월 화학물질 그룹 산하기구로 설립된 이래 농약등록, 위험성감소 및 평가, 시험기준 등 관련분야 연구결과의 공유 등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러한 논의는 FAO, WHO, UNEP, EU 등 국제기구는 물론 관련 협회, 비정부기관 등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약 등록시 서류요건 및 검토기준, 농약으로 인한 위험성 감소 및 평가기준의 국제적인 조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회원국이 수용함으로써 농약산업의 국제화를 제고하고 농약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인체 및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있다.

농약협회의 논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약 관련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OECD 회원국의 농약관련 정보 및 경험 수집, 국내 제도개선의 차원에서 농약협회에 관련 전문가 및 협회 관계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또한 효율적인 참여를 위해 회의 자료와 각종 OECD 규정, 추후 배포될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회의시 이를 반영하는

OECD

등 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

더불어 농약등록과 관련하여서는 화학물질그룹회 및 환경보전 및 안전과의 업무와도 많은 관련사항이 있다. 즉, 등록시 제출하는 기술적 자료의 상호인정에 관한 규정, 등록시 제출할 최소서류의 요건, 시험자료의 GLP에 따른 실시여부 등 제반사항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환경국 이외에도 무역국, 식량농수산물국 등에도 농약산업에 관련된 연관업무가 있으므로 이들 부서의 규정이나 회의내용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총괄적인 검토나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OECD가입 준비과정에서 OECD측과의 사전협의 및 가입심사를 통해 각종 관련제도의 정비 및 필요한 자료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 농약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96년도에 농약관리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OECD수준에 맞추어 개정한 바 있다.

남은 과제는 경쟁력 높이는 것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개방은 완결단계에 돌입하는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대처하여 생존내지는 발전할 수 있는가에 달

려 있다. 한마디로 해답은 국제화와 경쟁력의 제고에 있다.

현재 국내 농약산업계는 걸음마의 단계라 할 수 있겠다. 선진농약기업들의 국제화는 해외판매망의 확충뿐 아니라 국제적 신농약개발을 기본으로 하는 글로벌연구체제 확립이라는 목표가 가세되어 상호보완이 요구되는 파트너와 전략적 제휴가 꼭 필요한 환경으로 발전한 반면 우리나라의 농약기업은 경영, 연구, 마케팅 측면에서 담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장 절실하고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국제화 마인드라고 생각된다. **농약정보**

이 글에 이어서 다음으로부터 OECD 농약업의회 (Pesticide Forum)에서 진행중인 세부사업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상세히 알아봅니다.

- ①신농약개발과 관련한 시험법 및 발전연향
- ②EU/US의 생물학적 농약개발 및 그 검토기준에 관한 사항
- ③OECD의 농약관련자료 검토보고서 내용
- ④OECD/FAO공동 농약위험성 감소대책
- ⑤OECD의 농약관련산업의 미래방향 및 문제점